

「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10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4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10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농산물유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 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전시판매장 위치 추가(안 제2조)

| 구 분 | 주소 | 운영주체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| 용평면 탐거리길 63 (평창휴게소) |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| 추가 |
|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| 대관령면 대관령로 81 |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| 기존 |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
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「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4. 10. 2.
- 회부일자 : 2024. 10. 14.
- 상정일자 : 2024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우리 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 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시판매장 위치 추가(안 제2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서 지자체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우리 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 하여 운영 및 관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위치)에서 우리 군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치를 별표로 별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소를 추가하여 2개소로 현행화 함.

| 구 분 | 주소 | 운영주체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| 용평면 탐거리길 63 (평창휴게소) |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| <u>추가</u> |
|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| 대관령면 대관령로 81 |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| 기존 |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실정에 맞게 현행화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[붙임 2]

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5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4.10. 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중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하여 전시판매장 운영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시판매장 위치 추가(안 제2조)

1) 1개소 → 2개소

2) 평창군 전시판매장 현황

| 구 분 | 주소 | 운영주체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로컬푸드 직매장 1호 점 | 용평면 탑거리길 63 |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| 추가 |
| 로컬푸드 직매장 2호 점 | 대관령면 대관령로 81 |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| 기존 |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4. 8. 12. ~ 2024. 9. 1.(21일간)

- 평창군 공고 제2024-1180호, 농산물유통과-10330(2024. 8. 12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2255(2024. 8. 5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2255(2024. 8. 5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5706(2024. 8. 12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4393(2024. 9. 13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전시판매장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평창군 전시판매장 현황

| 구 분 | 주소 | 운영주체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| 용평면 탐거리길 63 |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|
|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| 대관령면 대관령로 81 |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 농특산품 <u>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</u>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시판매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2조(위치) <u>전시판매장은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81에 둔다.</u></p> | <p>제2조(위치) <u>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.</u></p> |

관계법령 발취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12. 30.]

제9조(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)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,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·개설·운영, 판로개척, 컨설팅,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-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,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|
| 연락처 | 033-330-1372 |